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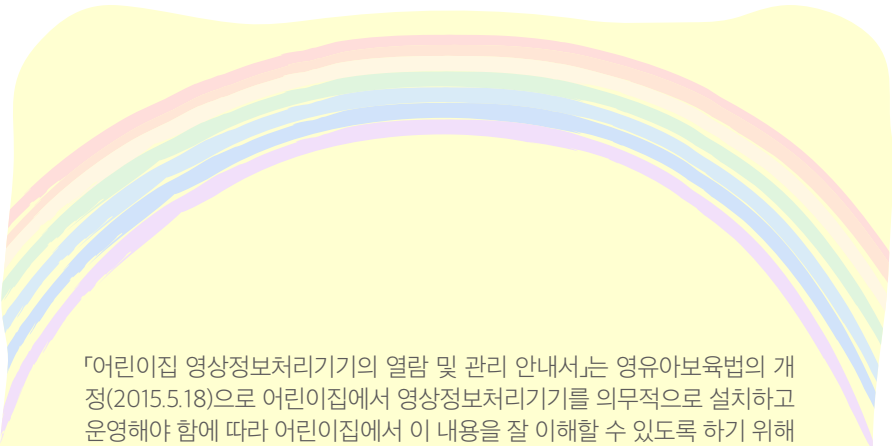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열람 및 관리 안내서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열람 및 관리 안내서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열람 및 관리 안내서」는 영유아보육법의 개정(2015.5.18)으로 어린이집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해야 함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이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작된 자료입니다.

본 안내서는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내용과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안내는 물론, 열람 요청 시 진행절차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보다 쉽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서식을 첨부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보건복지부(2015)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보육현장 및 관련전문가 자문회의와 행정, 법률 자문 등 여러 과정을 거쳐 정확한 내용 구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이나 사례는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하여도 일괄적인 적용이 어려우며, 더군다나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련된 복잡한 분쟁에 관해서는 본 안내서의 내용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 다각적인 방법으로 상세내용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열람 및 관리 안내서」가 보육현장에서 영유아와 교직원 모두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어린이집과 어린이집 이용 학부모 간의 신뢰관계 형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Chapter
01

- 5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개요

Chapter
02

- 13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의 열람

Chapter
03

- 21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보관 및 관리

Chapter
04

- 25
Q & A

Chapter
05

- 33
서식

Chapter

01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개요





1.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관?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는

어린이집의 상황을 영상으로 녹화 저장할 수 있는
카메라 기기 등을 말하며
영상정보처리기의 종류에는 **CCTV**와
네트워크 카메라가 있습니다.

※ 폐쇄회로 카메라(CCTV)와 네트워크 카메라

● 폐쇄회로 카메라(CCTV)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별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네트워크 카메라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 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목적은 무엇인가요?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설치·운영 합니다.

즉, 어린이집 내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보호, 안전사고의 예방,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 범죄예방, 증거확보 등을 위해 설치·운영 하는 것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및 제15조의4,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2015)

3. 어린이집 영상정보기기의 설치·운영 기준은 무엇인가요?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등의 방법은 영유아보육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그 하위법령 등의 규정 및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2015)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운영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권리침해 위험과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여 관리하고 처리하여야 합니다.

※ 어린이집의 영상정보의 열람에 관하여는 영유아보육법이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지켜야할 것은 무엇인가요?



1. 사전의견수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미설치, 또는 운영을 중지하는 경우 사전 의견 수렴을 해야 하며, **학부모 총회, 운영위원회, 학부모 및 교사 대상의 설명회 또는 설문조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 성능기준

고해상도(HD)이상의 화질(100만 화소 이상)과 60일 이상의 저장용량을 갖추고, **일정한 방향을 지속 촬영**하는 카메라를 설치해야 합니다.

※ 설치목적 이외로 임의의 조작이 가능하거나 녹음기능이 있도록 설치되어서는 아니 됨.

3. 설치구역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인근놀이터 제외), **식당, 강당**에 각각 1대 이상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하며, 그 외 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문가, 학부모, 교직원과 **협의하여 추가로 설치 할 수 있습니다.**

4. 안내판 설치

CCTV를 설치하였다면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안내판을 설치**하며,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수정**하여야 합니다.

안내판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CCTV 설치 목적 및 장소
- 촬영범위 및 시간
- 담당자, 책임자, 연락처

안내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장소

- 어린이집 출입구
- 어린이집 주변 경계부(담장)



설치 후 다음을 확인해주세요

- 녹화시간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
- 60일 이상의 영상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 공간이 충분한지!
- 정전 등 예기치 않은 상황 이후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작동, 보존기간 및 녹화시간 등의 설정사항에 이상이 없는지!



5.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CCTV (폐쇄회로 카메라)

사전의견수렴을 거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성능기준**을 지켜 **CCTV(폐쇄회로 카메라)**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성능기준: 고해상도(HD, 100만화소수)이상의 화질, 60일 이상의 저장기간, 일정한 방향의 지속촬영

2. 네트워크 카메라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전원으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으면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운영 할 수 있습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1항 제2호

- 네트워크 카메라에 대해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서면을 통해 신규반 편성월(예시 3월)을 기준으로 재원아동 및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동의는 1년 동안 유효하며, 다음 년도에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절차를 알려주세요!

네트워크 카메라의 설명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는 학부모, 보육교직원에게 네트워크 카메라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한 후 의사결정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의 전원 동의

「어린이집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운영) 동의서」 동의

네트워크 카메라 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 성능기준에 준하여 설치·운영, 열람

보고

서면동의 사실을 특별자치도 지사·시·군·구청장에 보고



6.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는 필수적으로 해야 하나요?



어린이집 설치·운영 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단, **보호자 전원**으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으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1항 제1호

- 서면동의를 신규반 편성월(예시 3월)에 받는 것이 원칙이나, 입소 상담 시 미리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 동의 기준일 다음에 입소한 보호자는 이미 결정된 사항에 따라야 합니다.
- CCTV 미설치 또는 운영 면제 기간은 1년 동안 이루어지며, 다음 년도에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어린이집 CCTV 미설치(미운영) 신고절차를 알려주세요!

보호자 전원의 동의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 미설치(미운영) 동의서」 동의

신고

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에 「어린이집 CCTV 미설치(미운영) 신고서」를 통하여 신고

통보

「어린이집 CCTV 미설치(미운영)신고발증」
→ 1년 동안 운영 면제

심의 (필요한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

7.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어린이집 대표자 또는 원장은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와 관련하여 **책임자**를 지정하고 **안전성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를 포함하여 **내부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켜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관리 하시면 됩니다.

책임자의 지정

구 분	내 용
설치책임자	▶ 어린이집 대표자 또는 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설치책임자
관리책임자	▶ 어린이집 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의 관리책임자 ▶ 운영담당자 및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지정 ▶ 설치·운영, 열람 요청 접수 및 처리, 영상정보의 수집·처리 관련 업무 총괄 ※ 영상자료의 유출·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여야 함
운영담당자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관련 업무의 수행 ▶ 설치·운영, 열람 요청의 접수 및 처리, 영상정보의 수집·처리 등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 및 특이사항 발생 시 보고 , 영상자료 녹화 및 검색, 기타 책임자 및 운영담당자가 지시한 사항 등의 업무 수행

안전성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

구 분	내 용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방지	▶ 영상정보를 관리하는 컴퓨터에 부팅암호 및 로그인 암호 설정 ▶ 영상정보를 관리하는 컴퓨터에 로그인 기록이 남도록 설정 관리
개인영상정보 저장장치의 보관	▶ 저장장치는 접근이 제한된 장소에 보관 ▶ 잠금장치 설치 ▶ 저장장치 보관 공간이 부족할 경우 저장장치 훼손이 어려운 케이스 등에 넣어서 보관
영상정보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 제한	▶ 영상정보에 접근 할 수 있는 인원을 제한 ▶ 영상정보가 열람·재생되는 장소는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에 대해서만 접근 허용(권한 없는 자의 접근 엄격히 통제)

※ 어린이집 원장은 CCTV 설치·운영 등과 관련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함.



영상정보처리기기 내부 관리 계획

- 어린이집 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내부 관리 계획」을 만들고,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학부모 및 보육교직원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내부관리계획은 아래의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포함하되, 어린이집의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수립하시면 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내부 관리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목적
- ▶ 영상정보처리기기 책임자 및 담당자
- ▶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 범위
- ▶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
- ▶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 ▶ 영상정보가 저장되는 장치 또는 기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3 제4항)
-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열람되는 장소
- ▶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3 제1항)

※ 촬영시간 :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원칙

※ 영상정보 보유기간 : 60일 이상

※ 영상정보 삭제 주기 : 3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Chapter

02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의 열람





1.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 관리 기준은 무엇인가요?



-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를 수집, 열람, 제공하는 것은 영유아보육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그 하위법령 등의 규정 및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2015)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영상정보는 설치, 운영 목적에 맞게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수집, 활용하여야 하며,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권리침해 위험과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여 관리하고 처리하여야 합니다.

2.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 열람 요청이 가능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 **보호자가 자신의 자녀(또는 보호하고 있는 아동)가 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어 요청하는 경우
 ※ 의사소견서 제출, 관계공무원, 어린이집 운영위원장, 지역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동행 시 즉시열람
- **관계공무원**(중앙행정기관, 국회, 법원, 지방자치단체 등)이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해 공문서, 조사계획서 등의 증표로 요청하는 경우
 ※ 보관기간 경과로 영상정보 파기, 영유아 안전 업무 수행과 관련 없는 사항을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즉시열람
- **아동보호전문기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가 어린이집과 관련된 아동학대 사건, 안전사고의 조사 및 처리와 관련하여 공문서, 신분증(예, 조사원증) 등으로 요청하는 경우
 ※ 보관기간 경과로 영상정보 파기, 열람 요청 내용이 해당 기관의 업무를 벗어난 경우를 제외하고 즉시열람
- **범죄의 수사,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3.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 열람 전 확인사항은 무엇인가요?

-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카메라의 영상자료만 열람 요청이 가능합니다.
- 영상자료의 열람은 원칙적으로 **보호자**(자료 요청자)와 **원장**이 할 수 있습니다.
- 열람의 요청자가 **정당한 요구권**이 있는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신분증, 공문서** 등으로 **확인한 후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열람의 범위**는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열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협의하여 결정 합니다.
- 열람 시 해당 영유아 이외의 사람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면 이들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하는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열람 시 해당 영유아 이외의 사람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노력의 예:

- 영상 요청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
-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자 준수 서약서 작성 또는 비밀유지에 대한 서약 등





어린이집 영상정보 열람의 절차를 알려주세요!

열람요청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 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일 경우
「CCTV영상물 열람 요청서」를 작성하시어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열람(제공) 결정 통지

어린이집은 요청서를 받은 10일 이내
「CCTV 영상장료 열람 등 요청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통하여
열람의 승인 또는 거부, 열람형태,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여
열람 요청자에게 통지 합니다.

열람(제공)

결정된 일시와 장소, 열람 형태에 따라 CCTV 영상을 열람합니다.
(열람일은 결정통지서 회신일로부터 **최장 7일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열람 시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열람후

열람대장 작성 및 관리

어린이집 원장은 열람 요청이 있을 시 그에 대한 조치 사항과 내용을
「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열람 전 확인사항

열람자(보호자)의 정당한 열람 요구권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공문서, 신분증 등을 확인한 후 열람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영상정보 관리 대장

·어린이집 원장은 CCTV 영상의 열람 요청이 있을 시 조치사항과 내용을 「영상정보 관리 대장」에 기록하고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영상정보 관리 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 영상정보 열람 요구자의 성명 및 연락처
- ▶ 열람을 요구한 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 ▶ 영상정보 열람의 목적
- ▶ 영상정보 열람 요구자에게 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 및 제공사유

4.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자료 열람 요청을 거부 할 수 있나요?



- 열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보관기관 경과로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 어린이집 운영위원장이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열람을 거부하는 것이 영유아에게 더 유익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위의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서면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열람 요청자에게 10일 이내 통지하여야 합니다.

5.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자료를 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제공해도 되나요?



-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 사유 외에는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열람만 규정하였으므로 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름



열람 이외 제공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의 관련 내용

- 사본이나 서버제공, 제3자 열람 요청 등의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 수사기관 및 법원의 제출 요구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므로 제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단,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으면 열람 이외의 제3자 제공(사본 및 서버 등)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며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인정보의 제공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